

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송미애 의원 등 1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3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육,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- “일제강점기”, “일제잔재물”, “친일인사”

○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
- 일제잔재물 발굴과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,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·추진
- 충청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

○ 일제잔재물의 발굴 등 (안 제4조)

○ 위원회의 설치 (안 제6조)

-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·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.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육,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고자 하는 것임.
-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나 이견이 없었으며, 도지사 의견(문화 예술산업과) 의견으로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조례 제명 등 일부 문구 수정요구를 반영하여 수정·보완 조치를 하였음.
- 이 조례안은 11개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 및 상위법,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됨.
- 그동안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 인적, 물적 역사흔적을 외면하는 실정이었으나 이 조례 제정으로 일제잔재물을 발굴하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과 이것을 국난극복과 애국심 고취의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

붙임: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. 끝.